

朝鮮後期 宮闕工事의 木材治鍊에 관한 연구

李權英

(동부산대학 부교수)

金純一

(부산대학교 교수)

1. 머리말

목재는 한국건축의 주류를 차지하는 목조 건축물의 주요 재료로서, 건축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관건이다.

소요 치수와 물량에 따른 可合木材의 求得 여부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치련·가공하는 작업은 건축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만큼, 다른 어떤 재료의 공역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특히 궁궐건축과 같이 최고 권부의 상정으로서 국력을 기울였던 영건공사¹⁾에서는 당시대의 건축생산력을 총 동원할 정도로 최고 수준의 치련 기술을 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궁궐공사에서의 목재 치련공역에는 당시대 최고 수준의 건축기술이 동원되었던 것이다.

목재의 치련은 원재를 이용하여 초련에서부터 최종 결구부재로 가공·조립하는 일련의 공정이다. 따라서 목조건축공사에서 치련작업은 일부 土役이나 石役 등을 제외하면 그 자체로서 건설공정과 다를 바 없다.

1) 여기서 궁궐공사는 도감을 설치해 운용되는 관영건축공사를 포괄한다. 이 경우 공사 주최자는 왕이 되므로, 그 대상이 祠廟라 할지라도 영건조직이나 공사진행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조영된 궁궐공사의 목재치련에 주안하여 이를 건축생산의 관점에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목재치련을 위한 치련역소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체 공역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역분담, 역소의 운용형태를 살펴 보고, 다음 치련공정별 공장의 직능과 그 변화추세, 그리고 치련공전의 책정과 지급양상에 대한 고찰 순으로 진행한다.

2. 治鍊役所와 工役

2-1. 工役分掌과 役所別 運用

조선후기 궁궐공사에서 치련역소의 구체적인 운용 실태를 밝혀 줄 사료는 그렇게 흔치 않다. 따라서 전체 영건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치련역소의 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전체 영건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치련역소의 구성과 역할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도감의 구성은 사무조직과 작업조직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작업에 임해서는 시설물 또는 공종에 따라 작업영역을 세분하여 각각의 공역소를 구성하게 된다. 도제조를 비롯한 상부 사무조직은 전체 공역을 형식적 측면에서 총괄

지휘하는 것이고, 실제 공역은 공역소별 실무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역소의 구성이나 분소별 업무분장은 일관된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대로 올수록 공역소의 구성 추세가 더욱 정교해지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각 궁궐공사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공역소 구성유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공역소와 그 보조 역소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인조 11년(1633) 창경궁수리도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공사는 수십동의 전각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큰 공사였지만, 대개 인경궁이나 경덕궁의 시설물을 철췌하여 移建하는 공역이었다. 공역부담이 적어 주요 전각을 중심으로 공역소를 분장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크게 시설물별 5개 공역소로 구분되고, 각 소에는 실무조직이 구성된다²⁾. 대개 각 소의 사무조직은 낭청, 감역관을 비롯해 원역 각 1~2인으로 구성된다. 그 작업조직은 목수편수를 비롯한 일부 직종의 편수와, 각색공장, 모군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작업조직은 영역부장이나 패장 등의 지시를 받는다.

한편 주요 시설물별 공역소가 구성된 외에, 材木所나 雜物所, 爐冶所가 설치된다. 이들 역소는 각 시설물의 공사진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재료별 공역소이다. 이전한 건물 외에 新造한 건물 및 창호 등이 있어, 이에 필요한 新入 재목³⁾을 비롯하여 잡물, 철물 등의 지원이 요구된 것이다.

창경궁수리공사에서는 재목소, 잡물소, 로야소는 각 소의 낭청이 겸찰한다. 재목소는 3소에, 잡물소는 1소에 각각 포함되어 별도의 사무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작업조직의 구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소는 잡물소를 겸하므로 기계장이 더 편성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로야소는 별도의 사무조직과 함께 작업조직인 治匠, 鐵匠, 朴排匠, 助役軍으로 구성된다.

이들 역소의 역할을 보면, 재목소는 신입 재목을, 잡물소는 채색잡물과 기계 소입 물종 등을, 로야소는 신입되는 각종 철물을 각각 공급 한다. 로야소는 단순히 재료공급만 행한 것이 아니라, 철물을 요구되는 규격으로 타조하여 공급한다. 이에 비해 재목소와 잡물소는 재료 공급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목재의 초련은 1소나 5소 내에서 담당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 소의 사용 연장 중 목재 초련 연장인 斧子, 大·中·小鉶, 角耳 등은 1소와 5소에만 보이고, 목수편수를 비롯한 편수는 1소에만 보이기⁴⁾ 때문이다. 入排는 시설물별로 진행된다.

둘째, 공종별로 공역소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현종 7년(1667) 永寧殿修改都監, 숙종 3년(1677) 南別殿重建廳, 순조 5년(1805) 仁政殿營建都監, 철종 9년(1858) 南殿增建都監 등 17, 18세기 대부분의 영건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영녕전수개공사를 보면, 5개 공역소를 구성하는데, 각 소의 조직은 낭청과 감조관, 원역, 공장, 모군 등으로 되어 있다⁵⁾. 시설물별 공역소의 구성과 비교하면, 사무조직은 같으나 작업조직의 구성이 다르다.

각 소 分掌내용을 보면, 1所는 木役, 破屋, 珠簾, 床卓, 鋪陳, 凤雀扇, 靑紅蓋 등 목역 위주의 공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작업조직은 목수를 중심으로⁶⁾ 引鉶匠, 晉鉶匠, 彫刻匠, 小木匠 등의 木工匠과 기타 공장으로 구성된다.

2所는 浮石, 開基, 地正, 定礎, 土役, 方甄, 磚石, 修掃 등 石役과 토목 공역 위주이다. 작업조직은 석수, 닉장, 야장으로만 구성된다.

3所는 舊材瓦 運置, 蓋瓦, 丹青을 비롯하여 神輦, 神輿, 腰輿, 龍亭 등의 보수 사용, 그리고 祭器庫, 典祀廳, 守僕房 등 舊材瓦를 이용한 일

2) 「昌慶宮修理都監儀軌」各所 構成 참조

3) 신입된 재목은 부등목 144조, 누주 436, 재목 536조 반, 서까래 536개, 후판 96립이었다.

4) 「昌慶宮修理都監儀軌」各所 諸色匠人秩과 用後還下秩, 鐵物打造秩 참조

5) 이하 「永寧殿修改都監儀軌」各所分掌秩 참조

6) 1소의 목수는 총 82명이고, 그 외는 1~20명이다.

부 시설물의 개조이다. 종묘 영녕전을 확장하는 공사였으므로 기존 시설물 중 일부를 이전해 轉用하는 공역과 아울러 개화, 단청 등 마무리 공역을 담당한 것이다. 작업조직은 漆匠, 畵員과 蓋瓦匠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들 주요 공역소 외에 보조 공역소로서 爐冶所와 別工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로야소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각종 철물과 공장들이 사용하는 각종 연장을 打造하는 공역을 맡았다. 별공조는 각종 假家를 조작하거나 주요 공역소 소용 잡물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공역을 맡는다. 남별전중건공사에서 별공조가 로야소를 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종별 공역소의 구성에서는, 시설물별 공역소의 구성과는 달리 여러 동의 전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의 건립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공사진행 순서상 개기, 지정, 정초 등 토목이나 일부 석역이 진행된 후 입주, 상량과 같은 목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다시 개와나 단청과 같은 공역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설물의 목역이 시작되는 동안 먼저 끝난 석역은 다른 시설물에 투입되는 등 직능별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으로 공사진행이 가능하다.

1소가 목재의 치련공역을 겸한 목역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종별 공역소의 구성은 직능별로 분업화된 작업투입과 반복을 통해 호흡을 맞춤으로써 공사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시설물별 및 공종별 공역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되는 경우이다. 순조 32년 西闕營建都監, 순조 34년 昌慶宮營建都監과 昌德宮營建都監, 고종 37년 永禧殿營建都監, 고종 43년 慶運宮重建都監 등 19세기 이후의 영건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공사는 대개 시설물이 많은 대규모 공역에서 채택되는데, 공역소의 운용체제가 매우 정교하게 구성된다.

예로서 창경궁영건의 경우를 보면, 작업조직 구성에서 营建都牌將 아래에 패장이나 편수를 비롯한 각종 匠募를 시설물별로 편성하는 한편

공종별로도 구성한다⁷⁾. 시설물별 패장은 통명전, 경춘전, 환경전, 함인정, 양화당, 연희당, 영춘헌, 연경당 각 殿堂에 패장 2인씩 배정된다.

공종별 패장은 貨木, 治木, 工踏, 窓戶, 檻木, 丹青, 石役, 燐瓦所, 治所 등 각 공종에 패장 1~9인이 배치된다. 9개 공종 가운데 목역과 관련된 것이 5개로, 공정순서나 건물 주요 부위에 따른 편성이다. 즉 목재 조달, 목재의 初鍊, 공답공포의 정련, 창호나 연목 공역이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다. 공종별 패장의 수는 창호에는 1인, 공답에 2인, 무목이나 연목에 3인, 치목에는 5인, 석역에는 가장 많은 9인이 배정된다. 공역의 대소와 비중에 따른 것이다.

패장의 지시를 받아 실제 작업에 임하는 최상위의 공장은 도편수로, 목역과 석역에만 1명씩 보인다. 그만큼 전체 공역에서 목역과 석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편수 아래에, 목역은 목수편수와 공답편수를 시설물별로 각 1명씩 배정하고⁸⁾, 석역은 석수편수를 전체 시설에 통틀어 3명을 배정한다. 연목편수는 시설물에 관계없이 통틀어 1명을 배정한다. 이는 공역의 중요도를 고려한 편수의 구성으로, 목역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시설물이나 공종별 편수 밑에 해당 공장과 잡역부가 다수 배정되어 작업에 임하는 것이다.

이같은 공역소의 운용체제는 순조 3년에 시작된 인정전영건공사에서 인정전 단일 건물에 채택된 이래, 더욱 체계화되고 있는 것이다.

각 시설물 및 공종별로 패장과 편수를 배정한 것은, 이들 각자에게 담당업무의 책임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방식의 채택에도 예산조달, 자재수급, 인력동원, 기술력 등의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다. 즉 대규모 영건공사에서 각 시설물의 건립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자재, 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해

7) 『昌慶宮營建都監儀軌』 座目條

8) 연경당은 다른 시설물과 달리 목수편수만 있고 공답편수가 없는데, 이는 공포를 사용치 않기 때문이다.

야 하고, 또 시설물과 공종별 공역소 상호간의 공조체제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공역소 운용체제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시설물과 공종별 공역소 상호간의 공조체제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건체제와 기술력은 전수되고 반복되면서 축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채택된 방식은 선례가 되어 다음 공사의 전범이 된다. 순조년간에 이루어진 영건공사에서 조직 구성원을 살펴 보면, 동일 인물이 수십년간 이곳 저곳에 종사하고 있는 것⁹⁾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이 궁궐공사에서 가장 비중이 큰 목역과 관련한 공장의 경우 한 공사에서 다른 공사로 이어짐과 동시에,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기술직에서 상위직의 사무직으로까지 단계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부 일반 공장들의 경우도 상당수 다음 공역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서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의 기술력은 향상되고 공역소의 운영체제는 보다 더 보완되면서 건축생산력을 진작시키게 될 것이다.

이들 궁궐공사는 당대 최고의 집적된 기술력이 발휘되는 공사이다. 또 조선후기 궁궐공사에 私匠이나 僧匠들이 다수 참여한 것¹⁰⁾ 등을 고려한다면, 민간이나 사찰의 건축공사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에 접어 들면서 공역소의 운용체제가 더욱 정교하고 체계화되는 한편, 공장의 직능 분화현상이 두드러진다¹¹⁾. 이는 축적된 기술력과 조직력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공사예산을 줄여 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대로 올수록 공장 등의 인력동원이나, 영선목재를 비롯한 자재의 조달 등에서 공사비

9)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 研究」, 기문당, 1993년, pp. 214와 249에서 밝힌 안순길, 김재홍, 이인득, 이완득 외에, 오필현은 인정전영건에서 공답편수, 서궐영건과 창경궁영건에서 무목폐장을 맡고, 김중득은 인정전영건에서 당가편수, 창경궁영건에서 환경전폐장, 창덕궁영건에서 각소폐장을 맡는다.

10) 앞의 책, pp. 176~179 등

11) 앞의 책, p. 206

부담이 증대되고, 공사예산의 확보도 차츰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다.

인력동원 측면에서 보면, 장모에게 지급되던 삭료가 18세기 말 이후 일급제로 변화되면서 공장의 임금이 단순한 육체노동자인 담군이나 모군의 노임보다 많아지고, 인건비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었다¹²⁾. 공장에 대한 대우가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민간건축공사에 종사하는 편보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시행하는 영건공사에 동원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었다¹³⁾. 조선후기 인력동원체제가 차츰 이완되고 있긴 하였지만, 여전히 왕권이 중심이 되는 봉건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한말까지 각사의 장적에 안부된 공장들을 다소 반강제적인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¹⁴⁾도 그런 이유에서다.

반강제적으로 공장들을 동원하여 결국 인건비 지출을 줄여 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것은 궁궐공사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이를 주도하는 국가로 볼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영목재의 조달 측면에서도 가장 부담이 적은 產地 外道 卜定은 갈수록 힘들어져 민간으로부터 사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었다¹⁵⁾. 19세기에 들어오면 국가가 관리하는 금산은 거의 황폐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재 매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그나마 私養山 작벌 매입이라도 시도해 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민간으로부터 사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목재 매입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궁궐공사의 시행을 당연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12) 정조 13년 문희묘영건부터 일급제로 바뀌는데, 김동욱, 앞의 책, p. 233에 의하면, 그 전후의 노임을 미국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때 일급제의 경우 공장의 노임이 전체적으로 상승된다고 함.

13) 김동욱, 앞의 책, pp. 253, 254

14) 『眞殿重建都監儀軌』 詔勅 庚子 9월 초 2일조, 『中和殿營建都監儀軌』 詔勅 辛丑 7월 15일조, 『慶運宮重建都監儀軌』 詔勅 甲辰 2월 30일조에, “各色工匠令各衙門案付者起送而無案付者推促使役”

15) 이권영 외,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집, 1998년 3월, pp. 20~23

또 예산확보의 측면에서도, 필요에 따라 왕은 궁궐이나 사묘 등 국가경영상 부득이 궁궐 공사를 실시해야 할 때, 국가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확보는 무엇보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의 공사기간은 비교적 짧은 데도 처음 의도한 바대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정역하여 공사가 자주 연기되는 것¹⁶⁾도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공사예산의 확보였다.

조선후기 국가재정은 차츰 악화되고 지출은 많아, 당해 연도의 재원으로 영건공사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도감을 설치하고 진행되는 영건공사에서는 중앙 아문 뿐 아니라, 지방의 각종 세원을 끌어 쓰고 있었다¹⁷⁾. 특히 18세기 말 화성성역은 각도의 예비비를 비롯하여 군영의 정변전 등을 5~15년 이후의 것까지 앞당겨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비정기적인 영건공사의 재원을 해당 부서¹⁸⁾가 아닌 타관서의 세원을 조달해 쓰는 것이나, 공사비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19세기와 구한말까지 거의 상례화되다시피 한다. 이는 국가재정이나 공사예산의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다음 건축공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연유로 19세기 순조년간 이후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는 부족한 예산 하에서 인건비나

16) 인정전영건공사에서 계해 12월 27일 개기 및 정초 시역하고, 갑자 3월 초하루 재목의 치련시역하였으나, 儒臣 김매순의 상소에 의해 그 보름 후 정역하게 된다. 지방 제음이 부역으로 시달려 원성이 자자하고 소요가 일어 날 조짐마저 보이므로 민폐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역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서궐영건은 한 차례, 창경궁영건은 두 차례 정역이 있었다.

17) 의궤 기록을 검토하면, 공사재원을 호조나 병조에서 조달하는 외에, 선혜청 등의 중앙 각사나, 지방의 각도 감영, 병영, 수영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은 인조 11년 창경궁수리도감부터 드러나며, 이후 인조 25년의 창덕궁수리도감이나 효종 7년의 창덕궁민수전수리도감 등에서 거의 상례화되고 있다.

18) 국가재정을 통괄하는 관서인 호조가 그 주된 조달처가 된다. 또 대동법 시행 이후 공납이나 부역이 物納稅化되면서 대동세의 납세처인 선혜청도 공사재원의 주요 조달처가 된다. 임란 이후 오영제를 주축으로 하는 일련의 군체개혁으로 軍役의 布納제가 보편화되면서 병조도 공사재원을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호조의 料米와 병조의 價布가 주요 재원이었다.

자재비 지출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및 자재의 효율적 운용체제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순조년간의 영건공사에서 공역소의 운용체제가 정교하면서도 매우 체계화되는 것도 이에 기인할 것이다. 각 시설물별 및 공종별 담당 패장이나 편수 등을 편성하는 것도 담당 시설이나 공종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므로써 공기단축 등을 이끌어 내어, 한정된 공사예산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고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후기 예산 부족은 오히려 건축생산력을 진작시키는 효과 또한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은 공역소의 운용체계에 한하지 않고, 그 하부 작업 구성원의 공역에서도 드러난다. 공장이나 모군에 의한 공역의 전문화가 그것이다.

2-2. 治鍊役所의 構成과 役割

목재의 치련역소는 앞서 살핀 전체 공역소의 구성과 관련되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시설물별 공역소를 구성한 경우인 창경궁수리에서, 각 시설물의 조립공정은 목수편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재목의 치련은 1소 또는 5소에서 담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치련연장이 이들 역소에만 보이고, 1소나 5소를 제외한 2~4소의 분장기록인 新造 窓戶條에만, 창호재를 引鉢所 세살(細箭)이나 세살소 인거목을 取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 만드는 각종 창호는 인거소에서 취용하고 부족분은 본부 材木所로부터 添用하라”¹⁹⁾고 하여 인거소와 재목소를 구분하고 있다. 또 “차양 및 각종 창호는 인거소 세살을 取造”하라²⁰⁾는 데서도 확인된다. 재목을 판각재로 치련하는 작업을 인거군이 맡은 것이다²¹⁾.

다음 공종별 공역소를 운용하는 경우, 목재 치련은 목역을 담당한 역소에서 이루어진다.

19) 「昌慶宮修理都監儀軌」 二所 新造窓戶數 참조

20) 「昌慶宮修理都監儀軌」 三所兼察材木所 不足新造窓戶

21) 인거군은 각 소의 작업구성에 보이지 않으나, 인거군의 산료가 지급된다. 이는 당시 인거군이 모군의 취급을 받은 것과 관련된다.

永寧殿修改工事의 경우 목역소인 제1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치련공역별 세분되어 진행하였다. 작업처인 假家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보이는 木材治鍊假家는 引鉢假家, 彫刻匠入接假家, 그 외 재련한 목물을 보관하기 위한 彫刻等物積置假家, 蔽鍊飛木 및 軍頭木入置圍排 등이다. 이 또한 작업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한 방편일 것이다.

그 구성이 더욱 체계화된 인정전영건을 예로 들어 살펴 보자.

인정전영건공사는 창덕궁 내 인정전을 재건하는 공역으로 단일 건물임에도 총 20칸의 중층을 건립하는 상당한 공역이었다. 이에 따라 공종 또는 직능별 분화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공역소의 운용도 세분화된다.

본 공역을 지원하는 別工作겸 爐冶所를 설치한 외에, 精鍊工役所로서 工踏所, 唐家所, 窓戶所, 座榻所, 檻木所 등²²⁾이 分設되어, 시설물의 부재 또는 부위별 工役分掌이 이루어진다.

각 精鍊分所에는 사무조직인 영역폐장과 작업조직인 편수 1인씩 배치되어 총괄하게 된다. 이는 “치목공역이 크게 요구되므로 기등, 보, 연목, 공답, 세살 등 종류에 따라 편수를 정해 역소를 나누어 치련하되, 통솔할 폐장이 없으면 匠募들이 공역을 깨울리하고 정밀치 못할 염려가 있다”고 한 데²³⁾서 연유한 것이다. 이들 편수가 배치된 공역소 외에, 편수가 없는 역소인 斑子所, 屏風所 등도 있었다.

각 분소의 匠募 구성을 보면, 공답소와 좌탑소는 목수, 조각장, 소목장으로 같고, 당가소는 이에 더하여 刀子匠, 豆錫匠이 더 있다. 창호소는 목수, 小盤匠, 木鞋匠, 조각장으로 구성되고, 연목소는 목수와 모군, 별공조는 목수, 야장, 거장으로 구성된다.

공답이나 좌탑, 당가, 창호 등은 크고 작은 흠이나 새김이 많고 짜 맞추는 공역이 많이 요구되므로, 협업을 전제로 한 공역 분담이 이루

22) 『仁政殿營建都監儀軌』 匠人鍊粧及雜物鐵物造作條에 보이는 分所의 편수 외에, 正弦邊首, 婦櫈邊首, 高柱三株採得 목수, 登櫈結構 목수가 있어 공정별 공역분화를 보인다.

23) 『仁政殿營建都監儀軌』 補目 甲子 正月條

어진 것이다. 이들 입배공장은 시설물의 부위별 해당 편수의 지시를 받아 정련공역을 행한 것이다. 이는 결국 도편수나 폐장의 지시와 책임 하에 전체 건물로 조립되는 공정을 따른다.

한편 이들 정련역소 외에, 정련공역에 앞서 요구되는 형상의 초련부재인 판각재나 원형 단면재로 켜고 자르고 다듬는 초련역소도 설치 운용된다. 즉 선장에 의한 초치련역소나, 거장에 의한 인거소가 그것이다. 의궤 工匠條에 선장을 비롯한 대인거장, 소인거장, 기거장, 걸거장 등의 명칭이 보이고, 이들의 작업가가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치목가가가 3곳에 나누어 설치된 외에, 장인별 수십동의 工役假家를 별도로 마련한다든지, 그밖에 부재 종류별로 가가를 설치하고 있다²⁴⁾.

가가의 구분은 공역의 구분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작업공정이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조선후기 궁궐공사에서 보이는 공장의 직능분화현상과도 관련될 것이다.

순조년간 시설물 및 공종별로 공역소를 운용하는 경우, 기록의 부족으로 초련역소나 정련역소의 구성과 역할을 상세히 고찰하기 힘든다. 그러나 의궤 座目條에 보이는 폐장과 편수의 구성이 인정전영건의 경우가 시설물별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치련공역소의 운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인정전영건의 경우를 시설물별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즉 초련과 정련공역은 인정전영건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결국 각 殿堂 편수나 폐장의 지시와 책임 하에 조립되는 공정을 따를 것이다.

3. 治鍊工匠과 職能

3.1. 治鍊工程과 工匠職能

궁궐공사의 공정은 대개 治木始役, 開基, 定礎, 立柱, 上樑, 畢役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목공사에 한정해서 본다면, 치목, 입주, 상량, 수

24) 예컨대 목수, 가칠장, 조각장, 소목장, 두석장, 야장, 줄장, 동사장 등 각각의 가가나, 소로, 가침, 공답, 창호 등의 각 가가이다.

장의 순서가 된다.

치목은 원재를 소요 형상의 단면과 길이로 다듬는 초련공역이다. 초련된 부재는 재·정련을 거쳐 입배공장에 의해 조립 결구된다.

이와 관련한 치련공장은 목수를 비롯하여 彫刻匠, 木鞋匠, 小木匠, 窓戶匠, 鉛匠²⁵⁾, 船匠 등이 있다. 이들 치련공장의 담당공역을 치련공정 순서로 살펴 보자.

먼저 재목을 자르고 켜는 공역은 거장이 말하는데, 인조년간의 창경궁수리와 저승전공사에서 引鉅軍으로 통칭된다. 그러나 치련연장이 大·中·小鉅로 구분되고 있어, 인거군 내에서도 공역의 분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군의 공역분담은 영녕전수개공사에서 인거장과 걸거장으로 분화되고, 경덕궁수리공사에서는 더욱 뚜렷해져, 大引鉅軍, 小引鉅軍, 皂鉅軍 등으로 세분되어 나타난다²⁶⁾. 이에 더하여 18세기 중반 진전중수공사(1748)에서 歧鉅匠이 모습을 보인 후 정례화된다²⁷⁾. 시대에 따라 공장의 직능이 분화된 것이다.

거장의 직능분화는 작업영역이 다르고 전문화되었음을 뜻한다. 걸거장은 요구되는 부재 길이로 토막내거나 재목의 양마구리를 정확히 잘라 내는 裁折 또는 두절공역을 맡는다. 재목을 길이방향으로 켜는 작업은 기거장과 인거장이 맡는다. 기거장은 片木을, 인거장은 죽이 있는 원재를 켜는 점이 다르다. 대인거장은 대인거를 사용하여 재목을 長, 廣, 厚가 큰 판재로 켜는 작업을 맡고, 소인거장은 소인거를 사용해 1차 작판된 판재를 더욱 작은 소판재나 각재로 만드는 공역을 맡는다. 인거장 중 졸음거(條乙音鉅)를 사용하여 연합이나 평교대 등의 각재를 만드는 장인을 졸음장 또는 조리장이라 부르기도 한다²⁸⁾.

25) 거장에는 인거장, 대·소인거장, 기거장, 걸거장, 조리장이 포함된다.

26) 『永寧殿修改都監儀軌』一所 工匠秩, 『慶德宮修理都監儀軌』各殿閨別工匠使役條

27) 『眞殿重修都監儀軌』一房 工匠秩 및 이후 儀軌 工匠條 등 참조

28) 『南別殿重建都監儀軌』二所 粟目秩 丁巳 4월 초 7일

다음, 圓柱나 圓道里, 圓椽 등의 구조재는 체목의 단면을 둑글게 치목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데, 이는 船匠이 맡는다. 선장은 17세기 궁궐공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도 주목된다. 선장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영조 24년(1748)의 진전중수도감부터이다. 17세기 초까지 초치련은 목수나, 목수의 지시를 받은 모군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부터 선장은 정례화되어 나타난다.

거장이나 선장에 의해 초련된 부재는 좀더 정확하게 다듬어지는 재련공정과, 그리고 결구직전의 조립부재로 만들기 위해 조각장, 목혜장, 소목장, 목수 등에 의해 홈을 파고 새기고 짜 맞추는 정련공정을 거친다. 그런데 의궤의 기록에서는 대개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재련 또는 정련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각장은 공답 공포와 살미첨차, 화반, 龍床 등에 草刻을 새기거나 홈을 파는 작업을 한다. 이를 出草라 하는데, 초각을 새기는 작업에는 밑그림(畫本)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용상의 畵龍 및 蓮葉, 초립공, 이립공, 행공, 대공, 화반 등의 出草次 破油范과 畵筆, 眞墨을 마련하라는 기록을 여러 곳²⁹⁾에서 확인케 된다. 조각장은 부재에 초각이 필요한 조선후기 모든 공사에 나타난다.

초각에 사용한 연장은 슛미리(雄尾里), 平尾里, 刀子, 小錯, 엇미리(彥尾里), 小同串, 削刀, 五乃刀, 圓錯 등이었다³⁰⁾. 초각을 새기는 일은 건물의 공포부재 외에 문살이나 좌탑, 당가의 공포 등에도 필요하였다.

목혜장이 영건공사에 등장하는 것은 진전중수공사(1748년)부터이고, 이후 정례적으로 동원된다³¹⁾. 이들은 三軍營 소속으로 되어 있고, 繢大典이나 大典會通의 京外工匠條에는 보이지

조에 보이는 졸음장은 경운궁중건공사의 조리장과 같다.

29) 『永寧殿修改都監儀軌』移文, 『南別殿重建都監儀軌』一所 粟目秩 丁巳 4월 초 4일조, 二所 粟目秩 丁巳 3월 24일조, 『垂恩廟營建都監儀軌』別工作 手本秩 甲申 정월조

30) 『垂恩廟營建都監儀軌』別工作 手本秩 甲申 2월조, 『仁政殿營建都監儀軌』匠人鍊粧及雜役鐵物造作條

31) 『眞殿重修都監儀軌』一房 工匠秩과 각 都監儀軌 工匠條 등 참조

않는다. 이로부터 목혜장은 군영에서 나막신 만드는 자들인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건공사에 참여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목혜장의 공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건물의 조립공정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화성성역의 4문루나 행궁 등 목구조 건축물에는 항상 배정되고³²⁾, 경운궁중건공사에서는 중화전, 행각, 중화문에서 입배공장으로 배정하고 있어³³⁾ 확인된다. 목혜장은 부재 조립이나 수장 시 깊은 흄을 파내는 공역을 맡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인정정영건공사에서 목혜장이 목수, 조각장, 소반장과 함께 창호소에 배정되어 있다³⁴⁾. 창호공사에서 목혜장이 톱은 사용치 않고 加刀耳나 大錯, 銳刀 등의 연장으로 할 수 있는 일³⁵⁾이란 깊은 큰 흄이나 구멍을 파내는 작업이었을 것이다.

소목장 역시 조선후기 일찍부터 영건공사에 동원되고 있으나, 그 공역 내용을 밝혀 줄 관련기록을 찾기 힘든다. 다만 소목장은 창호조작, 당가나 좌탑, 浮龍, 五峰屏, 九龍床 등의 조성역에³⁶⁾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창살이나 조리목 등 소각재로 창호나 당가 등 가구를 짜는 공역을 맡은 것으로 짐작된다. 소목장의 연장은 크고 작은 刀子나 끌(錯), 엇미리, 평미리, 同串, 邊湯刀, 西道里, 骨尾里, 加莫金, 不豆只 등이다.

창호장은 다른 목공장에 비해 영건공사에 등장하는 것이 매우 늦다. 20세기 초두 永禧殿營建工事(1900년)에 가서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서 영건공사에서 창호조작은 다른

32) 『華城城役儀軌』 卷5 財用 上, 卷6 財用 下 實入條, 附編三 財用 行宮實入條 및 公廟實入條 등에서 각 시설물의 공장 구성 참조

33)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 내 각 건물의 예산산출내역, 『匠役記綴』 권18 乙巳 4월 26일과 甲辰 10월 16일조

34) 조각장은 창호공사에서 포도문분합문과 같이 문살에 조각을 새길 경우 필요하였고, 소반장의 공역은 알 수 없다.

35) 김동숙, 朝鮮後期 建築工事에 있어서의 工匠道具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2호 통권 28호, 1990년 4월, pp. 71~80에서 공장도구의 용도에 대해 살폈다.

36) 『仁政殿營建都監儀軌』 匠人鍊粧及雜物鐵物作造條, 『匠役記綴』 권18 을사 4월 26일조

공장이 담당했을 터인데, 목수와 소목장이 그들이다. 인정전영건에서 창호소의 구성은 목수와 소목장 외에 조각장이나 목혜장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목혜장은 18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며, 조각장은 앞서 살핀 바 대로 특정 문살에 조각을 새기는 공장이다. 또 17세기 저승전공사에서 창호조작을 담당한 공장으로 세살 목수가 보인다³⁷⁾. 세살이란 창살을 일컫는 것으로 창호를 담당한 목수임을 보여준다.

창호조작을 목수와 소목장이 담당하다가 20세기 초에 와서야 직능이 분화되어 창호장이 분담하게 된다³⁸⁾.

한옥에서 부재의 결구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서 짜 맞추는 작업이 많으므로, 건축물을 비롯한 당가, 창호, 좌탑 등 목역의 조립공정은 관련된 여러 공장이 작업을 분담하게 된다.

그외 각 의궤 공장조에는 수십 여종의 공장이 보이나 이들은 목공사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예로 珠簾匠, 斜笠匠, 弓人, 貫子匠, 穿穴匠, 桶匠, 多繪匠 등은 祭室의 珠簾遮日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공장이다³⁹⁾. 鞍子匠은 개와 작업시 막새에 구멍을 뚫는 공역을 맡는다⁴⁰⁾.

이들 공장 외에 목재치련에 종사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업모군이다.

3.2. 專業募軍과 職能變化

모군은 각종 궁궐공사에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한 육체노동을 하는 자들이다. 모군은 선조 39년 종묘와 창덕궁영건에서⁴¹⁾ 처음 임금고용되기 시작한다. 일단 모군이 고용됨으로써 모립제의 적용을 받았던 분야에서는 그것

37) 『儲承殿儀軌』 外所兼細箭所懸板所 工匠秩

38) 『匠役記綱』 권18 을사 2월조에, 중화전의 交窓 입배 공장으로 목수만이 있어, 창호제작은 창의궁치목소의 창호장이, 건물에 조립하는 것은 목수가 맡는 것으로 보인다.

39) 『眞殿重修都監儀軌』 一房 甘結秩, “本所所掌珠簾始役次珠簾匠斜笠匠弓人貫子匠穿穴匠桶匠多會匠漆匠等 椅席縫造次毛衣匠?匠 及鋪陳下排次蘆簾匠等…”

40) 『南別殿增建都監儀軌』 粟目秩 丁巳 5월 초 1일조, “蓋瓦時莫沙穿穴次以鞍子匠所用鵝烏朴串釘五箇…”

41) 『宣祖實錄』 권 201 선조 39년 7월 己巳條, 권203, 선조 40년 9월 己亥條

이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도성 내 영건공사의 경우 주로 京募軍을 모집해 썼는데, 그들을 가려 뽑아서 역소의 모군으로 고용하는 업무는 한성부가 맡고 있었다. 한성부는 도감의 지시에 따라 모군을 고용할 때 작업상황 및 조건을 미리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자유의사에 의해 응모여부가 결정되는 추세였다. 더 나은 작업조건을 찾아 貨倅爲業하는 임노동자층이 도성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⁴²⁾.

이들 전업화된 임노동자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이들 부류의 모군 가운데는 특수한 작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조직 등을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각종 잡역에 고용되는 사례도 있었다⁴³⁾. 이들은 동시에 크고 작은 관부의 공역에 품팔이로 고용되기도 하는 존재였다.

또 영조38년(1762) 莊祖永祐園墓所工事에서 는 沿江의 용산지역에 거주하던 인거모군들이 수명으로 구성된 패의 단위로 고용되고 있었다⁴⁴⁾. 벌목을 전문으로 하는 斧軍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노역이 있을 때마다 고용되기도 하였다⁴⁵⁾. 특수한 작업에만 전문적으로 고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牌 단위로 작업조를 편성해 작업에 임하고, 그 거주처인 가가도 동일 직종의 작업단위에 맞추어 지어졌다. 작업능률과 노무 관리를 위한 한 방편일 것이다. 모군패 내에는

42)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년, p. 192에 의하면, 이들은 도시빈민층을 형성하면서 도성 변두리의 沿江지역인 용산, 서강, 마포, 뚝섬, 왕십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43) 숙종 24년(1698) 「莊陵封陵都監儀軌」 造成所 粟目秩, 공사에서 假家 등을 조작하는 일에 고용된 걸거모군들은, 본래 소속처 없이 沿江에 살고 있는 楠商이라고 한다.

44) 『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造成所條

45) 예로 숙종 원년(1674) 顯宗崇陵山陵都監이 한성부에 내린 감결 갑인 9월 초 8일조의 기록에 의하면, 벌목을 위한 모군을 고용할 것인데, 國葬都監의 使役이 끝나는 대로 산릉도감의 모군으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願立人處에 알리라 하는데, 한성부 중 西部에서만 응모자를 구하였다.

십장에 해당하는 等牌가 임명되고, 모군 등패가 다시 모군 都等牌의 지휘를 받는 편제 형식도 나타난다⁴⁶⁾. 이들은 다시 작업소별 영역부장이나 패장의 작업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작업체계는 작업장 인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여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편 모군 가운데는 필요한 장비를 지참하고 특수한 작업에 전문적으로 고용되는 자들로서 걸거모군이나 인거모군, 선장 등이 있는데, 이들은 18세기 말 이전에는 공장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모군이나 이와 유사한 취급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정조대의 영건공사 이후에야 비로소 공장으로 분류되게 된다.

인조 11년 창경궁수리에서부터 영조 52년 경모궁개간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각종 영건공사에서 인거장은 인거군으로 불리어지고 공장과는 구분되고 있다. 이들 의궤서에서는 각종 장인과 모군 등에 대한 고가를 지급하거나, 각 분소의 작업구성 인력을 표시하면서, 다른 공장과는 달리 인거군, 대인거군, 소인거군, 걸거군 등으로 호칭한다.

이들의 고가도 공장과는 다르고 모군과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예컨대 영조 40년(1764) 垂恩廟營建都監儀軌 匠募等料布 每朔上下式例에 의하면, 공장은 木 1疋과 米 9斗, 모군을 비롯한 모조역, 대소인거군은 목 2필과 미 9斗로 책정지급하였다. 당시 18세기 중반까지 장모의 고가가 삭료로 지급되고, 또 모군이 공장에 비해 더 많은 고가를 지급받은 것을 감안하면, 대인거군과 소인거군이 모군과 동일한 고가를 지급받으면서 특별한 기능을 지닌 자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예가 숙종 3년(1677) 남별전중건공사

46) 기록상 등패가 궁궐영건공사에 등장한 것은 정조 18년에 시작된 화성성역부터이고, 이후 20세기 초까지 정례적으로 나타난다. 각 기록에서 등패와 도등패는 혼용되고 있고, 모군과 담군에 대해 도등패 각 2명씩 배정된다. 특히 등패는 상전 별단조에서 공장과 같이 3등으로 상급을 받고, 공장조에 명단까지 오르며, 다음 영건공사에 이어지고 있다.

에서도 보인다. 粟目秩 丁巳 4월 초 5일조에, “목물을 인거하기 위해 모군 6명을 별도로 세울지 아니면, 元모군 중 6명을 차출해 사역할지를 분부해 달라고 당상에게 품했”을 때, “三江鉅匠을 推促해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재목을 인거할 때 모군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차츰 전문 기능을 제대로 갖춘 경강변 거주의 거장을 사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내용이다.

이들 인거군은 대개 경강변을 무대로 활동하던 임노동자 집단으로서 전문적으로 재목의 작판에만 종사하는 자인 것이다.

인거군은 숙종 19년 경덕궁수리공사부터 차츰 대·소인거군, 걸거군 등으로 직능 세분화를 보이고, 이후 영조 24년 진전중수공사와 영조 28년 의소묘영건공사에 이르면 공장으로 편입되어 훈련도감 등에 안부된 공장이 된다.

영조년간의 궁궐공사 기록에서는 인거군과 인거장 두 호칭을 혼용하고 있어, 공장으로 편입되었지만 종래의 모군적 지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과도기적 현상을 보인다. 다른 일반 공장보다 고가가 높게 책정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영조 52년(1776) 경모궁개건도감의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剥料價는 각색공장이 每朔當錢 6냥 6전이었던 데 반해, 모군이나 담군을 비롯한 인거군은 매삭당 전 8냥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조년간에 들어 서면 공장이나 모군 등에 대한 노임지급방식이 삭료에서 일급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공장들도 직능별 고가가 차등지급되고, 인거장의 급료도 다른 공장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 지급되기에 이른다.

예컨대 정조 13년(1789) 문희묘영건도감의궤 物力條 料布式項을 보면, 목수를 비롯한 석수, 조각장, 소목장 등은 매일 전 4전 2푼, 개장 등은 전 3전 8푼, 니장, 가칠장, 목혜장 등은 전 2전 8푼, 대·소인거장, 기거장, 걸거장, 기계장 등은 전 2전 5푼으로 책정된다. 영조년간까지의 영건공사에서 받아 온 대우와는 상반된 것으로, 불과 10 여년 사이에 거장은 공장들 중

가장 낮은 급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입배 공장인 목수, 조각장, 소목장이 가장 높은 급료를 받는 것에 비해, 거장들의 초련공역이 단순하고 고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19세기까지 공장 중 가장 낮은 대우를 받는다⁴⁷⁾. 20세기 광무년간의 공사에서 초련공장을 비롯한 모든 장인은 동일한 일급을 받는다. 다만 경운궁중건에서는 도급전이 주어진다.

한편 인거장을 비롯한 거장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업화하고, 공장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선장이 조선후기 궁궐공사에 모습을 보인 것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다. 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영조 원년(1724) 종묘개수도감의 궤에서이다. 이후 영조 24년 진전중수도감부터 선장이 각 도감의궤에 나타나고 있으나, 17세기 영건공사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장은 체목이나 서까래재를 대자귀로 다듬어 등근 단면의 부재로 만드는 초치련 공장이다. 17세기 영건공사에서도 초치련 공역은 있었을 터인데, 이 공역을 목수나 목수의 지시를 받은 모군이 담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7세기 궁궐공사에서 공역의 구성을 보면, 판재나 각재로 만드는 인거역은 대개 인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초치련을 위한 별도의 공역소 구성은 보이지 않으므로, 대개 재목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목소의 인력구성 가운데 목역과 관련한 공장은 그나마 가합하기로는 목수가 있을 뿐이고, 그밖에 모군이 보인다. 그렇다면 초치련 공역은 목수나 모군 중 누군가 맡았을 것이다.

궁궐공사에서 선장이 처음 모습을 보이는 宗廟改修都監儀軌에는 공장과 모군에 대한 급료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목수를 비롯한 일반 공장은 공장이라 지칭하여 동일한 급료인 木 1疋

47) 정조 20년(1796) 화성성역에서 鉄匠은 공장 중 가장 낮은 고가인 전 3전을 일급으로 지급받은 외에는 철종 9년(1858) 남전증건공사에 이르기까지 모군과 동일하게 전 2전 5푼으로 고정된 고가를 지급받는다. 예외적으로 순조 5년(1805)의 인정전영건에서는 급료지급이 18세기 중반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되어 匠募雇價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은 매명당 전 6냥 6전을, 모군과 대인거군은 전 8냥을 지급받는다.

과 米 9斗를 책정한다. 이에 반해, 선장을 비롯한 대인거군, 소인거군, 車匠, 雪馬匠 등은 따로 구분하여, 공장보다 높으면서 모군이나 모조역과 동일한 삭료인 목 2필과 미 9두를 책정 지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 중엽 까지 모군이 공장보다 높은 급료를 지급받은 것을 감안하면, 결국 선장도 거군과 마찬가지로 모군과 유사하게 취급되다가 공장으로 편입되고 영건공사에 동원되는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여 영조 24년 진전중수도감에서는 선장이 동원되어 다른 일반 공장과 같이 분류되어 동일한 급료를 지급받았다.

이후 영건공사에서 선장의 동원은 일정치 않다⁴⁸⁾. 화성성역 이후 19세기에는 선장의 동원이 정례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18세기 말까지 궁궐공사에 선장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조 5년 仁政殿營建都監儀軌 移文 甲子 8월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인정전의 영건을 이번 달 내에 시작할 것임을 하달하고, 20일부터 다시 시역 하라. 그런데 이번 체목을 치련하는 일은 유난이 어려운데 적은 수의 목수로써 전적으로 책임을 지워 거행할 뿐 아니라, 예전에 이미 初劈鍊하는 일에 船匠輩를 시험적으로 써 보니 大斫耳手는 족히 쓸만 하였다. 전례에 의해 移文하니 貴司의 안부 선장 한 50명은 각자 대자귀를 지니고 이번 20일 새벽까지 올려 보낼 뜻을 각별히 각 津의 別將 等處에 嚴飭하도록 하시오”라고 舟橋司에 공문을 보낸다.

이 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 먼저 18세기 말까지 궁궐공사에서 체목의 초치련역에 선장을 동원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음, 19세기 이후 영건공사에 동원된 선장은 주교사 소속의 장인으로 경강변의 각 진에서 배를 만들던 자들이라는 점이다.

48) 영조 28년 의소묘영건이나 영조 40년 수은묘영건도감에서는 보이지 않고, 영조 52년 경모궁개건도감에 잠시 나타나며 정조 13년 문희묘영건공사에서는 다시 사라진다.

또 선장은 장인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대자귀수, 즉 단순한 기능을 소지한 모군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18세기까지 일부 영건공사를 제외하고 초치련 공역은 목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거행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목수가 직접 초치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역 등 모군에게 지시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선장이 동원된 경우에 모군과 같이 취급되어 급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목수의 작업지시를 받아 모군이 초치련하는 형태로 보아진다.

한편 조선후기 궁궐공사에서 목수를 비롯한 각종 공장에 대해 작업 시 助役을 덧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역은 공장의 직능에 따라 募助役, 肉助役, 奉貼軍 등으로 구분되고 배당 인원수도 달랐다.

한 예로 영조 24년 진전중수도감에서 목수 1명에 모조역 1명, 야장 1명에 모조역 2명과 육조역 1명, 석수 1명에 육조역과 모조역 각 1명이 배당되고, 조각장, 목혜장, 소목장 등은 2명 당 육조역 1명이, 화원은 2인당 봉첩군 1명, 결거장을 비롯한 인거장, 기거장 등은 3명당 육조역 1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공장에 따라 조역을 모조역, 육조역, 봉첩군 등으로 구분한 것이나, 동일한 공장 아래 모조역과 육조역이 배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장과의 관계나 그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조역의 정확한 역할을 밝혀 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월급으로 지급받은 삭료를 보면, 모조역은 목 2필과 미 6두를, 육조역과 봉첩군은 각각 목 2필을 지급받았다. 모조역이 육조역이나 봉첩군보다 많은 급료를 받은 것이다. 다른 궁궐공사에서도 봉첩군은 화원에만 배정되고, 또 육조역이 봉첩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점에서 이들은 공장의 기술을 전수받는 견습생으로 생각된다. 이 곳 저곳의 공사장에 따라 다니며 공장을 보조하여 그 기술을 습득하는 조수를 떠 올리면 이해가 쉽다.

그런 까닭으로 조역이라는 명칭 앞에 공장과의 관계를 떨어질 수 없는 혈연적 관계로 보아 '肉'자를 붙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비해 모조역은 현장의 모군 가운데 필요에 따라 모집한 자들로 공장의 지시를 받아 허드레 심부름을 하는 단순 잠역부로 여겨진다. '募'자가 접두어로 붙은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⁴⁹⁾.

모군이 월급으로 목 3필과 미 6두를 지급받은 것에 비하면, 모군의 하나인 모조역도 육조역보다는 다소 높은 급료를 받지만 목 1필의 격차를 보인다. 이는 모조역의 공역이 모군에 비해 훨씬 가벼운 공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각 공종에 배정된 이들 육조역이나 봉첩군 등은 기술전수과정을 겪어 세월이 지난 후 기술축적을 통해 해당 공장으로 성장하고, 다른 궁궐공사에 참여하는 형태를 따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들 조역은 잠재적 예비 공장으로서 영건조직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 된다.

4. 治鍊工錢과 支給

4-1. 治鍊單價의 適用

화성성역 이후 석공사에서 석재의 규격에 따라 치련단가를 책정한 경우는 많으나, 목공사와 관련해서 본다면, 경운궁중건공사를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다. 또 경운궁중건공사에서 入排工匠에 의한 정련공역은 공역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일 6냥의 공전이 책정 및 지급되므로, 여기서는 초련공전에 한정하여 치련단가를 살펴 보도록 한다.

치련단가는 공역별 치련 대상 목재의 규격에 따라 매우 세분화되고, 실제 지급된 치련단가는 「豫算明細書」⁵⁰⁾에서 책정된 것과는 다소

49) 야장의 경우 1명당 모조역 2명과 육조역 1명이 배정되는데, 화성성역에서 야장의 조역은 鍊磨匠, 吹爐軍, 打造軍 각 1명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연마장이 취로군이나 타조군에 비해 높은 기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연마장은 육조역에 해당되고, 취로군과 타조군은 모조역에 해당될 것이다.

50)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

차이를 보인다. 계획 당시와는 달리 작업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초련공전은 결거장의 頭折工役, 선장의 初治鍊工役, 거장이나 조리장의 作骨工役에 대해 각각 折, 尺, 骨 당으로 책정 지급된다. 또 각 공역별 초련공전은 공역의 종류가 같을 지라도 재목의 규격에 따라 소요 工力이 다르므로 단가가 달리 책정된다.

먼저 鋼鉄匠의 折當 두절공전은 대개 大樑 1냥, 民大樑 9전, 不等木 7전, 體木 5전으로 책정된다. 그 단가책정 기준은 재목의 단면크기였다. 그런데 『匠役記綴』에서 실제 지급된 鋼鉄匠의 折當 頭折工錢은 대량 6전 또는 7전, 별부등 5전, 부등 4전, 누주 3전 등이다.

따라서 실제 지급공전은 책정공전에 비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재목이 강치 목소에서 두절공역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1차 두절을 거친 경우라도 두절 단가에는 전혀 무관하므로 예산책정과는 달리 실제 공전은 낮게 지급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船匠의 初治鍊 공전은 부재의 단면형태가 원형인 경우 대량 1냥 또는 7전, 민대량 7전, 서까래 7전, 5전, 3전이고, 방형의 편목인 경우 대량 및 민대량 7전, 부등목 및 체목 4전이었다. 책정된 초치련 공전은 재목의 길이에 따라서 尺當으로 책정되고, 또 재목의 단면크기와 단면형태에 의한 工力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匠役記綱』 重建所船匠初治鍊役記에서 실제 지급된 공전은 대량 4전 5푼, 5전, 6전 5푼 등이고, 貿大樑 9전, 선자연 3전, 장연 3전 5푼 등으로서, 책정된 공전보다 다소 낮으면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결거장 공전에서와 같이 책정 공전보다 다소 낮게 지급공전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예산명세서의 공전 책정은 강치목소에서의 초련공역을 기준으로 한 반면, 『장역기철』의 공전 지급은 중건소에서의 재련공역을 기준으로 한 데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¹⁾.

51) 당초 공전 책정 기준에는 없던 주목, 고주, 평주, 량목,

작골공전은 재목을 길이 방향으로 켜는 일인으로, 재목의 단면 크기와 길이의 대소에 따른 골당 단가로 책정된다. 예산명세서에 따르면, 작골은 편목을 판재로 작골하는 경우에 기거장 작골공전이, 작골된 판재를 각재로 더욱 잘게 작골하는 경우는 조리장 작골공전이 책정된다. 또 창호용재와 같이 초치련되지 않은 원재를 판재로 작골하는 경우 인거장 작골공전이 책정되기도 한다.

『장역기철』에 나타난 실제 지급된 작골공전을 『예산명세서』의 책정된 것과 비교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예산명세서』에서 기거장 공전은 큰 대량 편목을 工踏板으로 작골하는 데 4냥 5전, 그밖의 대량과 민대량 편목을 厚正板으로 작골하는 데 3냥, 단면이 작은 부등목 편목을 후정판으로 작골하는 데 2냥이 책정된다.

그런데 이는 이들 편목의 작골 공답판이나 후정판으로 창호용재가 아닌 구조재, 수장재 등의 여타 부재를 만드는 것으로 예정한 것이다. 따라서 책정된 기거장 공전의 예산과 실입은 중건소와 창의궁치목소로 구분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중건소의 기거장 공역은 徑 1.2척 이상이고 길이는 20척 이상부터 10척 이내까지의 다양한 대량 편목을 작골하여 공답판, 수장판, 장송판 등의 판재나, 평방, 柱木, 종량, 평고대 등의 부재를 만든다. 이에 비해 창의궁치목소의 기거장 작골공역은 대량, 민대량, 短吐, 별부등, 누주 등의 원재를 수장판, 장송판, 박판, 오리판 등의 판재로 작골하는 것이 다르다.

중건소와 창의궁치목소에서 실제 지급된 작골공전은 재목의 길이와 단면크기에 따라 매우 세분되어 나타난다.

한 예로 중건소의 경우 편목을 공답판이나 장송판으로 작골하는 데 따른 長徑別 공전 단가를 『匠役記綴』 重建所條里匠役記에서 정리

표-1. 片木의 重建所 歧鉅匠 作骨單價 (단위: 尺, 兩)

徑 長	1.0 척	1.1 척	1.2 척	1.3 척	1.4 척
8 척	1.20냥				
11 척	1.65	1.94	2.11	2.29	2.46
12 척	1.80	2.11	2.30	2.50	2.69
13 척			2.49	2.70	2.92
14 척			2.69		
n 척	0.15n	0.07+0.17n	0.02+0.19n	-0.02+0.21n	-0.07+0.23n

하면 표-1과 같다.

이로부터 중건소의 작골공전은 장 1척, 경 1촌 당 일정한 규칙으로 매우 세분되게 책정됨을 발견하게 된다. 즉 동일 경일 경우 장 1척 당 경 1.0척은 1전 5푼씩, 경 1.1척은 1전 7푼씩 등 등차급수적으로 공전 가감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동일 장인 경우 경 1촌당 장 11척은 0.17~0.18냥씩, 장 12척은 0.19~0.20냥씩, 장 13척은 0.21~0.22냥씩 등차급수적으로 공전 가감이 이루어진다. 공통적으로는 장 1척, 경 1촌당 公差간의 차액은 2푼이 된다.

이와 같이 공력에 따르는 세분화된 공전의 책정은 근성을 가진 노무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창의궁치목소의 기거장 작골단가도 중건소와 마찬가지로 동일 경이나 장일 경우 장 1척 또는 경 1촌 당 일정한 공전 가감이 주어진다. 작골공전은 원재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길이와 원경일 경우 동일한 작골공전이 책정되는데⁵²⁾, 이는 같은 공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편 창의궁치목소에서 대량과 민대량의 작골 판재는 공답판이나 후정판이 아닌 주로 수장판, 장송판, 박판인 점이나, 예산책정과는 달리 기거장 작골공역이 강치목소가 아닌 중건소

종량, 충량, 퇴량, 우미량, 원도리, 도리, 납도리, 반도리, 창방, 귀틀, 추녀, 사래 등 각종 부재에 대한 선장 초치련 단가가 중건소에서 지급되는 것도 그런 연유이다.

52) 작골공전은 장 12척, 경 1.2척인 檻柱와 裁折民大樑은 3냥 8전 8푼을, 장 10척, 경 1.7척인 短吐와 裁折大樑은 3냥 4전을 각각 책정하고 있다.

와 창의궁치목소에서 보이는 점도 예산과는 다르다. 또한 예산책정 시의 재목도 실입 재목과는 종류나 규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목재의 수급상황의 변경과 더불어 당초 외주를 통한 창호조달로부터 창의궁치목소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한 데 따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목의 변제과정 및 기거장 작골 단가도 세분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재목의 단면 크기나 길이의 대소에 따른 공력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작골공전을 책정하려고 한 점은 같은 맥락이다.

조리장의 작골공역은 중건소와 창의궁치목소로 양분되어 진행된다. 중건소에서의 조리장 공역은 수장판, 후정판, 장송판 등의 판재를 벽선, 方椽, 長散里, 引中枋, 띠목, 조리목 등의 수장용 각재로 작골하는 것이다⁵³⁾. 이에 비해 창의궁치목소에서의 조리장 공역은 수장판 등의 판재를 조리목, 오리목, 창살목, 창살 등 창호용 소각재로 반복 작골한다.

조리장의 작골공전은 예산책정 시 기거장 작골 판재인 후정판의 조리장 재작골에 대해, 대량이나 민대량은 1냥, 부동목은 7전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수급상황의 변화에 따라 실입 재목과 그 중간부재의 종류 및 규격도 다양해지므로, 조리장 작골공전은 작골될 판재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 매우 세분하여 지급된다.

먼저 중건소의 조리장역을 보면, 작골공전은 1차 작골된 판재의 길이, 두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송판이나 후정판은 두께가 3촌으로 동일하여 같은 길이일 경우 같은 작골공전을 지급받는다. 이에 비해, 장송판의 두께는 이보다 작은 1촌이나 1촌 5푼이므로, 후판재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작골공전은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⁵⁴⁾. 또 동일 판재도 작골 길이 1척당

53) 그밖에 편목을 조리장공역의 대상부재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편목을 작골하여 수장판 등의 판재로 만들고 이를 다시 조리장 작골공정으로 연속시킴으로 해서, 기거장 작골공역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포함한 것에 불과한 듯하다. 원재의 인거역과 판재의 조리장역은 뚜렷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창의궁치목소에서 일부 구별하기도 하지만 창호목물인조역과 같이 통칭한 것도 동일한 예가 된다.
54) 일례로 장 10척인 수장판, 후정판, 장송판의 작골공전

단가 가감이 이루어진다⁵⁵⁾.

다음으로 창의궁치목소의 조리장 작골공전의 경우도 중건소에서와 마찬가지이나, 작골될 판각재의 길이나 두께 외에, 작골수도 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점⁵⁶⁾이 다르다. 이는 작은 부재의 경우 한번 작골된 각재를 등분으로 재작골할 때, 작골대상 부재를 함께 포개어 한꺼번에 여러 골을 냄으로써 공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역시 당시 부재생산과정의 일반적 관례를 따른 것일 것이다.

인거장 작골공전은 창의궁치목소에서 초치련이 되지 않은 창호용 원재인 대량, 민대량, 단대량, 단토 등을 수장판, 장송판, 박판 등의 판재로 작골하는 과정에서 지급된다. 이를 정리

표-2. 彰義宮治木所 引鉢匠 作骨單價 (단위: 尺, 兩)

圓徑 長	1.6 척	1.7 척	1.8 척
19 척	4.87 냥	5.17 냥	5.47 냥
20 척	5.12 냥	5.44 냥	5.76 냥
21 척	5.37 냥	5.71 냥	6.05 냥

하면 표-2와 같다.

표-2로부터 동일 원경인 경우 장 1척당 원경 1.6척은 2전 5푼씩, 원경 1.7척은 2전 7푼씩, 원경 1.8척은 2전 9푼씩 작골공전을 가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동일 장인 경우 경 1촌당 장 19척은 3전씩, 장 20척은 3전 2푼씩, 장 21척은 3전 4푼씩 작골단가를 가감한다. 원경 1촌이나 장 1척당 공차간 차액은 2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인거장 작골공전은 작골될 원재의 규격인 길이와 원경이 기준이 된다.

한편 선행연구⁵⁷⁾에서 목상들로부터 원재의

은 각각 6전, 6전, 3전이다.

55) 예로 후정판의 경우 장 14척, 12척, 8척, 6척을 비교해 보면, 작골공전은 각각 8전 4푼, 7전 2푼, 4전 8푼, 3전 6푼을 책정하여 장 1척 당 6푼씩을 가감하고 있다.

56) 예를 들어 장 7척의 조리목의 경우 작골수 1골, 4골에 대해 각각 3전 5푼, 2전 4푼을 책정하고 있어서, 작골수가 많을수록 단가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조리목을 1골한 부재는 오리목이 되고, 4골한 부재는 영창살이 된다.
57) 이권영 외, 慶運宮 重建 木工事의 豫算과 實入에 관한

에 반제품인 중간부재로서 수장용이나 창호용 각종 판재나 소각재를 매입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 가운데는 중건소나 창의궁치목소에서 작골되는 장송판, 박송판, 용지판, 상·중·인방, 장산리, 벽련목, 대·소조리목 등이 다양 포함되어 있다.

이들 목물이 민간시장의 규격화된 유통상품 일 뿐만 아니라, 치련공역에 동원된 공장이 대개 私匠들이다. 따라서 이들 중간부재의 치련 공정, 치련단가 및 목물가 책정방식은 민간 목상이나 궁궐이나 당시로서는 일반화된 통용적 방식이었을 것이다. 즉 목물의 수급상황에 따라 목물가나 치련공역가의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재의 치련과정이나 단가 책정방식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치련공장들의 專業化된 공역활동이다. 경운궁중건공사에 참여한 선장, 기거장, 걸거장, 조리장 등의 치련공장 중에는 직전의 中華전영건이나 영회전영건에 대개 동일 役種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표-3. 구한말 세 都監 참여 專業 初鍊工匠 명단

구분	永祿殿營建都監 (1899~1900)	中和殿營建都監 (1901~1902)	慶運宮重建都監 (1904~1906)
船匠	尹學仁, 吳基福, 李元春 등 45명	文道成, 尹學仁, 李元春, 李在根 등 54명	文道成, 尹學仁, 李元春, 李在根 등 80명
歧鉅匠	金昌根, 尹乃石, 張春興 등 19명	金昌根, 松益善, 黃鎮永 등 55명	金昌根, 松益善, 黃鎮永 등 80명
彙鉅匠	金天汝, 朴順石, 鄭用淳 등 10명	高濟桓, 孔元成, 金慶南, 金永植, 崔仁哲 등 13명	高濟桓, 金慶南, 金永植, 崔仁哲 등 25명
條里匠		權元成, 金永植, 金鴻天, 朴順石, 鄭喆洙 등 35명	孔元成, 權元成, 金鴻天, 朴順石, 鄭喆洙 등 52명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으로부터 孔元成이나 朴順石의 경우처럼 일부 자리 이동이 있고, 각 공사간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근 8년간 동일 역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는 곧 이들 치련공장들이 전업적인 형태로 공역에 임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외에 기록상 명단을 밝

히지 않은 일반 치련공장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전업성은 더욱 확실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들 치련공장들이 궁궐공사가 없을 때는 전업적인 공장으로서, 그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업장인 목상의 목재 치련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⁵⁸⁾. 그 작업장이 선행연구⁵⁹⁾에서 언급한 바, 육천 좌우 연변의 사호, 사촌리, 탄항 등을 중심으로 한 경강변이 된다.

이상으로부터 치련공전은, 목재의 수급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과 실입 사이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치련할 대상재의 규격 등과 관련한 공력의 대소에 따라 매우 합리적인 단가의 책정과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진일보한 도급방식으로서, 화성성역 이후 석공사에만 적용된 것이 목공사에도 채택된 것이다.

당시 목공사가 궁궐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므로, 목재의 치련이 조속히 끝나야, 다음 정련공역으로 이어져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한 공사 집행자의 입장은 치련단가의 세분화를 통해 1차적으로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쏟은 공력이나 작업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전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세분화

58) 이권영 외, 慶運宮 重建 木工事의 豫算과 實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16호, 1998년 9월, pp. 45~47. '중건 2차공사의 소입 목물 대부분이 韓得珠와 韓龍植을 비롯한 민간 목상이 납품한 것이다. 이들 중 한득주와 한용식은 사호를 중심으로 한 경강변에서 활동한 자들로, 이들의 납품가는 각각 475,916냥 5전, 410,961냥 1전 5푼에 달하는 富商들이다.' 특히 한용식은 배회한 구슬, 「이제 이 조선 땅에도 녹이 슬었네」, 1981년, pp. 47, 48에서, '한용식이 두 목수지만 나라 치목을 대기 때민에 돈이 많이 생겨요. 나라의 치목은 전부 그가 맡아서 하걸랑…저기 원효로 사가 거기가 소유가 전부 한용식이 소유야…나라에 치목 대는 거 뭐 어렵지 않아. 나라에서 해 들여라 허구 물목이 나오면은 고대루 해서 바치는 거지. 새남터 거기에 나라 재목을 전부 쌓았어요. 나라 치목소 없어지구는 거기서 용산 재목상이라구 장목전 크게 했지'라는 기록이 있어, 그 활동상과 함께 치목까지 겸했음을 알 수 있다.

59) 이권영 외,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통권 14호, 1998년 3월, pp. 10~13

된 치련단가의 책정과 지급을 통해 노무관리를 용이하게 도모한 것이다.

결국 조선후기 자재운반에만 채택된 도급방식이 화성성역에서 일부 확대되고, 경운궁중건에서는 전면 확대되므로써, 조선후기 건축생산력을 진척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⁶⁰⁾.

4-2. 治鍊工錢과 都給方式

도급이란 어떤 공사에 들 비용을 미리 정하고 도맡아 하게 하는 일이다. 이는 근성이 있는 일꾼들을 삭료나 일급으로 다스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므로 도급방식이 동원되며, 이 방식은 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급방식은 조선전기의 부역에 의한 인력동원이나, 조선후기 삭료를 지급하여 인력을 부리는 궁궐공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록상 조선후기의 궁궐공사 중 전체 공역은 아니지만 일부 공역에서라도 도급방식이 채택된 것은 정조 20년 화성성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그 이전인 인조 11년 창경궁수리공사를 비롯한 각종 영건공사에서 재목이나 석재를 수레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車子 1輛當 적재 재목의 수를 정하거나, 운반거리에 따라 왕복회수를 달리하는 등 도급방식이 채택되고 있다⁶¹⁾.

그러나 직접 공역에 임하는 匠募에게 작업일 수가 아닌 작업량에 따라 공전이나 고가를 도급전으로 지급하는 예는 화성성역 이후에서야 비롯된다.

화성성역에서 도급이 적용된 곳은 개장의 개와작업⁶²⁾, 치련야장의 철물타조, 석수의 부석작업, 담군의 석재운반, 수레나 말에 의한 석재운반, 향모군이 안면도에서 원재를 작별하고 운반하는 과정 등이다⁶³⁾.

60)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재원부족으로 미리 예견된 공장에 대한 인건비 미지불 등을 감안하면, 도급방식의 전면 확대가 공사진척을 위해 악용된 점 마저 없지 않다.

61) 운반방식에 일찍부터 도급방식이 선택된 것은 이동거리상 차부나 마부의 근만을 감독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62) 오량가는 매칸당 전 6전이, 행각은 매칸당 전 4전이 책정된다.

이러한 도급방식은 이후 19세기의 궁궐공사에서 부분적이나마 거의 일반화되어 채택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 국가적인 공사를 추진할 때는 대개 공사진행 등에 대한 갖가지 사항은 대개 전례를 참조하게 마련이고, 이를 의궤의 事目이나 稟目條에 근거를 밝히게 된다⁶⁴⁾.

그런 점에서 서궐영건 등에서는 석재를 떼내고 다듬는 일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일까지도 정식으로 삼아 품목조에 명기해 두고 도급전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어떤 공사에서 한번 좋은 안으로 채택되면 다음 공사의 본보기가 되어 계속 이어져 내려 가는 것이다⁶⁵⁾.

도급방식 중 물품 1개 또는 1주를 단위로 하여 도급하는 것을 個數給이라 부른다. 이는 단기간의 단순작업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던 모양이다. 개수급은 화성성역에서 개장의 개와작업에 적용되었던 도급방식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세기 거의 모든 궁궐공사에서 채택되고 있다. 단순 잡역부를 쉴 틈 없이 부릴 수 있는 방도로서 공사기간의 단축을 비롯한 공사비, 특히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18세기 말 이후 공사예산의 확보가 어려웠던 사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적 형식의 도급방식이 공사 전반에 걸쳐 시행된 것은 광무 8~10년(1904~1906)에 실시된 경운궁중건공사다. 즉 목공사를 비롯한 석공사나, 니장공사, 칠공사, 단청공사, 도배공사, 개와공사, 철물공사, 창호공사 등에서 각종 공장 및 잡역부에게 도급방식이 채택된⁶⁶⁾

63) 이권영, 華城城役의 興建體制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년 2월, pp.54~57

64) 인정전영건공사에서도 장모 등의 공역한 일자나 고가지급에 대한 사항도 전례인 화성성역을 참조하라고 하였다. 그 후 순조 30~34년에 이루어진 서궐영건이나 창경궁영건, 창덕궁영건에서도 갑자년의 영건공사인 인정전영건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65) 철종 8년(1857) 인정전중수공사에서도 화성성역과 마찬가지로 안면도에서 별목작업에 고용된 鄉募軍에게 작별고가로 매주당 돈 4전의 품삯을 지불하였다.

것이다.

그 가운데 목재의 치련과 관련한 목공사에 한정해서 도급방식을 살펴 보자.

먼저 목공사의 초련역에서, 걸거장 두절 또는 재절, 선장 초치련, 거장 작골 등에 대한 초련공전은 역소에 관계없이 각각 절, 척, 골 등 단위공역당 단가 책정에 바탕을 둔 도급전이다. 이 경우 초련 대상 재목의徑이나 길이, 초련된 부재의 단면형태 등과 관련한 공력정도에 따라 매우 세분되어 지급됨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입배공장에 의한 목부재의 정련공전을 살펴 보자.

입배목수를 비롯한 정련공장의 소요 인원은 건물 규모나 부재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산출된다. 건물규모의 예로서, 중화전 행각의 경우 入排木手·彫刻匠·木鞋匠의 인원수를 1칸당 90명을 기준으로 총 8,280명이 산정된다. 합녕전과 합녕전 행각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매칸당 각각 350명과 40명씩의 입배공전을 지급하였다.⁶⁷⁾ 중화전의 경우도 예산명세서에서 책정된 목수, 조각장, 목혜장 각각의 입배공전은 『匠役記綴』乙巳 4월 26일조의 실제 집행된 공전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총 도급액을 연인원수로 나누어, 이를 1인당 공전으로 환산하면 일당 6냥씩이 된다. 그러나 입배공전이 일급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변형된 도급전의 성격을 떤다. 즉 각 시설물의 규모나 칸수를 기준으로 공종별 소요 연인원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 인력의 일당을 곱하여 공사비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匠役記綴』에서 시설물에 실제 도급

66) 그 중 잡역부에게 도급전이 주어진 경우를 『重建都監會計』, 『匠役記綴』의 기록에서 몇가지지만 찾으면 다음과 같다. “中和門內步石三間掘土及地定支架軍都給錢五百三十七兩六錢印”, “咸寧殿修粧入排複道柱礎地定入排落水簷階掘土長培入排三面行閣修粧及長培入排等支架軍都給錢二千五十五兩二錢印”, “中和殿西行閣九間撤毀支架軍都給錢一百八十九兩印”, “中和殿東行閣二十六間材木入排擔軍都給錢六百七十三兩四錢印”

67) 각 건물의 예산명세서에서 배정된 입배공장의 연인원을 책정된 정련공전 6냥으로 나누면 각 건물의 칸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매칸당 입배공장의 수는 예산과 실행이 일치한다.

전이 집행된 경우를 정리하면 표-4와 같고, 1

표-4. 시설물별 도급전 지급내역(정련공전: 6냥/명)

시설명	규모	入排工匠	매칸 인원	연인원
光明門		목수, 조각장, 목혜장		3,808명
朝元門		"		1,740명
建極門		" , 연목		170명
紅園內堂	24칸	목수	100명	2,400명
紅園內外堂 複道	3칸	"	100명	300명
紅園內外堂 行閣	間半櫓 23칸	목수, 연목	45명	1,035명
景孝殿長房	間半5櫓 17칸	목수, 연목	36명	612명
	3櫓 8칸	"	34명	272명
公事廳	間半5櫓 24칸	"	36명	864명
	3櫓 6칸	"	34명	204명

인당 공히 6냥씩인 점은 동일하다.

표-4를 통해 출입문은 단칸으로 되어 있어서 총괄하여 연인원과 도급총액을 산정하고, 그 규모에 따라 도급액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 시설은 매칸당 소요 인원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정하는데, 특히 몇櫓집이거나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달랐다. 규모에 따른 공력정도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광명문의 경우 단칸임에도 불구하고 24칸의 홍원내당에 비해 연인원이나 총 도급액이 훨씬 많다. 그 정확한 규모 차이를 알 수 없으나, 광명문의 경우 조각장이나 목혜장 공역이 요구되는 공답공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원문과 건극문의 경우도 약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규모보다는 요구되는 공역, 즉 조각장과 목혜장의 담당공역에 기인할 것이다.

창호의 경우는 중화전에서 분합목수와 조각장에 대해서 葡萄二層廳板分閣은 매짝당 각각 45명, 25명씩을, 단분합은 40명과 25명씩을, 교창은 목수 35명 또는 28명을 배정한다⁶⁸⁾. 그러나 여타 건물의 경우는 대개 작은 치수의 일반 창호로서, 공장의 구분없이 창호의 종류에 따라서만 매짝당 공전을 정하고 있다. 즉 細箭廳

68) 『匠役記綴』 권18 을사 2월조에서 교창의 규격이 다르다.

板分閣은 48냥, 完子紙廳板分閣은 72냥, 斜箭交窓은 100냥, 盲障子는 13냥 등으로 매각공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창호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工力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이 역시 도급공전으로 산출했음을 알 수 있다.

경운궁 중건공사에서의 도급방식은, 화성성역에서와 같이 미리 작업량을 정해 두고 이를 이행했을 때 작업일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노임을 지급하는 순수한 도급방식과는 달리 변형된 방식의 도급이 선택되고 있다.

공기단축을 도모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계획 당시 의도적으로 매칸당 인원수가 적게 배정된 상태라 하여도 공사 완성 때까지 책정된 공사비 밖에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은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인력을 힘껏 부려 공기를 단축하는 한편, 공사비 지출도 줄이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는 당시 공사재원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로 여겨진다.

경운궁중건공사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사 전반에 도급전이 실시된 것이다. 이 공사가 실시되던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은 일제의 강압 하에 왕조의 제반업무가 해체되고, 그 권한이 총독부로 이관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더구나 국가재정의 상황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대규모 공역을 펼치기에는 힘겨운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강력한 중건의지로 공사가 시작되나 진행과정에서 무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재원과 예산부족을 극복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18세기 말 화성성역 이후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던 도급방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또 조선후기부터 진행되어 온 영건공사에서의 인력 조달은 당시의 추세상 거의 자유임노동으로 바뀌어 있었으므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서는 나름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다. 바로 그 방안이 도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급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공사재원으로 시작된 공사였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 예컨대 공사후 노동자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자재를 납품한 상인들에 대한 자재비의 미지불로 인한 수차례 결친 호소⁶⁹⁾도 그러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는 결국 이후 경운궁중건에 참여한 공사조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유임노동자로서 그때 그때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잡역부의 경우 닷새마다 노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의 성격상 우두머리인 편수를 중심으로 공사를 맡아 모여 다니는 공장들의 경우는 다르다. 공사 집행부가 공사기간 중 각 직종의 편수들을 회유해 가며 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체불한 것이 65% 이상 많게는 90%까지 이르렀다는 것⁷⁰⁾은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영건조직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확인하는 매우 어려운 설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시대를 거치면서 앞서 축적되어 온 영건조직과 건축기술력은 쇠퇴되고 종래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5. 맺는말

조선후기 궁궐공사에서 공역소 운용방식은 19세기 초 순조년간을 기점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체계화된다. 종래의 공역소 운용방식은 대개 목역을 중심으로, 토역 및 석역, 개와 및 칠공사 등 공종별로 삼분하고, 공사에 필요한 부수적 재료인 철물이나 잡물을 공급하는 보조역소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19세기에는 이러한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공역소는 공종별로 더욱 세분화되는 한편, 시설물별로도 운용되었다.

특히 목역 관련 역소는 초련, 재·정련, 조립 등 치련공정별로 크게 구분되고, 각 치련역소는 다시 세분화된다. 초련역소는 초치련역소와

69) 김순일,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년 2월, pp. 60~67

70) 김순일, 앞의 논문, pp. 61~63

인거소로 구분되고, 재·정련역소는 건물의 부재별 역소로 구분된다. 재·정련된 부재는 조립공정으로 넘겨져, 각 시설물별 편수나 패장의 지시 하에 조립되었다. 이 때도 건물 주요 부위별 편수와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

목재의 치련공정에 참여한 공장의 구성과 직능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크게 목수를 중심으로 조각장, 목혜장, 소목장 등의 정련 및 입배공장과, 거장과 선장의 초련공장으로 구성된다.

초련공장은 소요 길이나 단면형상으로 다듬는 치목공역을 맡고, 정련공장은 조립 직전의 부재로 더욱 세밀하게 다듬는 공역을 맡는다. 18세기 중엽에 가서, 선장과 목혜장은 궁궐공사에 참여하고, 거장은 직능별 완전한 분화를 보며, 창호장은 가장 늦은 20세기 초에 나타난다. 치련역이 차츰 세분되고 전문화된 것이다.

특히 초련공장인 거장과 선장은 18세기 중엽까지는 공장이 아닌 모군으로 취급되었고, 이후 案付工匠이 된다. 이들 외에 전업모군으로서 공장과 패를 이루어 작업에 임하는 조역 가운데, 육조역과 봉첩군은 공장의 기술을 전수 받는 예비공장이었다. 또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업모군 중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등패나 도등패는 잡역부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로서 공장의 대우를 받았다.

치련공장의 목재 치련단가가 책정되고 목공사에 도급이 실시된 것은 20세기 초 경운궁중 건공사였다. 화성성역부터 석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역에 도급방식이 채택된 이후, 목공사를 비롯한 공사전반에 확대 실시된 것이었다.

치련단가는 초련공역에만 적용되었고, 대상 부재의 규격에 따른 소요 공력 정도와 관련하여 매우 세분되었다. 정련 및 입배공장에 대한 공전지급은 대상 건물의 규모에 따라 매칸을 기준으로 한 변형된 도급방식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궁궐공사에서 목공사와 관련되어, 공역소 운용의 체계화나, 공장의 직능분화, 전업모군의 공장 편입, 도급방식의 확대 실시 등이 19세기 초나 20세기 초에 있었던

것은, 축적된 기술력이나 조직력에 당연히 바탕하겠지만, 재정악화로 인한 공사재원의 확보가 어려웠던 데도 기인한 바 같다.

참고문헌

「景慕宮改建都監儀軌」, 「慶運宮重建都監儀軌」, 「國역華城城役儀軌」, 「南別殿重建廳儀軌」, 「南殿增建都監儀軌」, 「文禧墓營建都監儀軌」, 「西闕營建都監儀軌」, 「垂恩廟營建都監儀軌」, 「永寧殿修改都監儀軌」, 「永禧殿營建都監儀軌」, 「懿昭廟營建廳儀軌」, 「仁政殿營建都監儀軌」, 「仁政殿重修都監儀軌」, 「莊陵封陵都監儀軌」, 「匠役記綴」, 「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儲承殿儀軌」, 「朝鮮王朝實錄」, 「宗廟改修都監儀軌」, 「重建都監會計」, 「中和殿營建都監儀軌」, 「中和殿重建豫算明細書」, 「貞殿重建都監儀軌」, 「貞殿重修都監儀軌」, 「昌慶宮修理都監儀軌」,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 「昌德宮修理都監儀軌」, 「昌德宮營建都監儀軌」, 「咸寧殿新建豫算明細書」,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 1) 김동욱, 朝鮮後期 建築工事에 있어서의 工匠道具에 관한 연구, 大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2호 통권 28호, 1990년 4월
- 2) 김동욱, 韓國建築工匠史研究, 기문당, 1993
- 3) 김순일, 慶運宮의 營建에 관한 研究 -工事의 體制와 執行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4) 배희한 구술,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나무, 1981
- 5) 이권영 외, 慶運宮 重建 木工事의 豫算과 實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16집, 1998. 9
- 6) 이권영 외, 朝鮮後期 京江邊 營繕木材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통권 14집, 1998. 3
- 7) 이권영, 華城城役의 營建體制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A Study on the Trimming of Wood in the Construction of the Palace in the 2nd half of the Choseon Dynasy

Lee, Kweon Yeong

(Associate Professor, DongPusan College)

Kim, Soon Il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Broadly speaking, this paper is concentrated on the trimming of the wood demanded for the palace, constructed in the 2nd half of the Choseon Dynasty. To be concrete, this is the study on the craftsman and craftsmanship concerned with the trimming of the wood, its system, and terms of payment of his wages. Construction reports, financial reports, job slips, written estimates, bills for payment, and other documents in those days are examined for the study.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through the study.

- 1) The operation system of whole construction office and its suboffice was very specialized and systematize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 2) The craftsman engaged in trimming of the wood was subdivided by work function.
- 3) The craftsman for its first trimming, i.e. 'keojang' or 'seonjang' had been treated as a special labor recruited to the mid-18th century, after that, was enrolled into the craftsman.
- 4) A unit cost of its first trimming was firstly appropriated into the reconstruction of the Kyongwoon Palace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 was very subdivided for a personnel management.
- 5) Contract works were widely applied to all workers engaged in the reconstruction for an efficiency of the accomplishments.